



COVID-19

인도네시아 정부 대책

2 April 2020

KPMG Indonesia | Clients & Markets





Indonesia (1/3)

일반정보

2020년 3월 31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COVID-19 판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2020년 정부령(Perppu) 1호에 서명하고, 역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IDR 405.1조 - USD 약 245억)을 발표함.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별 전면적 사회통제, 특정 지역통제 등 정부차원의 통제를 위한 규제안을 발표함.

경기부양책

2020년 3월 3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2020년 국가예산은 IDR 405.1조로 발표함. 이로 인하여 국가예산 적자는 GDP의 5.07%에 이를 것으로 추정(발표 전 국가예산 적자는 3%선). GDP 3%를 넘는 국가예산 적자 완화정책은 3회계연도(2020년, 2021년, 2022년)에만 적용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부터 이 적자를 3% 미만으로 조정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함.

구분	예산	배분
헬스케어	IDR 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용키트와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 장비의 구매가 최우선 의사 및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업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건강보험(BPJS Kesehatan) 보험료 지원
사회적 보호	IDR 1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family hope program의 1천만 가구와 the staple food program의 2천만 가구 지원이 최우선 취업 전 카드 프로그램(사전 근로 카드/Kartu Pra Kerja) 예산은 최초 IDR 10조에서 IDR 20조으로 예산확대, 해고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소상공인 등 560만명을 지원할 예정 450Kva를 사용하는 2,400만명과 900Kva를 사용하는 700만명을 위한 전기 무상공급. 저비용 주택 지원(정보보호주택 프로그램에 따른 17만5000채 신규 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IDR 1.5조) 기본적인 지원(물류 등) (IDR 25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공제	IDR 70.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소득이 IDR 2억 미만인 제조업 근로자는 6개월 동안 소득세 면제 19개 제조업 분야(*)에서 수입관세 납부 6개월 연기 19개 제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가속화 법인소득세는 25%에서 22%로 인하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부채상환이 6개월 연기 <p>(자세한 내용은 "조세혜택"을 참고) (*) 화학원료 및 제품산업/전기장비산업/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산업/제약, 화학약품 및 전통약품산업/비금속 산업기타 운송장비산업/제지 및 종이제품산업/식품산업/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산업/기계 및 장비산업/섬유산업/고무,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산업/가구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산업/비금속 광물산업/서기계 및 장비금속제품산업/완제품 및 원부자재산업/음료산업/가죽제품 및 가죽, 신발산업</p>
경제적 회복	IDR 1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을 위한 restructuring과 financing이 최우선(은행과 비은행 금융산업으로부터의 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사업목적 IDR 100억 미만의 대출에 대한 신용완화. 이자는 줄이고 상환은 최대 1년 지연)

정부가 발표한 기타의 경기부양책:

- 수산업과 임업산업을 포함하여 749개 HS code 제품군에 대한 상품의 수입제한을 완화, 위생증명서와 목재취급증명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철강 및 합금강 등 원자재뿐만 아니라 설탕을 포함한 여러 식품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입제한이 단순화, 정부는 또한 동물, 의약품,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단순화.
- 원산지(또는 원산지함)의 Surveyor Report 면제 형태로 의료기기 및 개인보호장비 수입을 가속화,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입완화 적용.
- 2020년 6월 말까지 소득세, 마스크의 원부자재,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의 수출을 한시적으로 제한
- 평판 우수 무역업자(reputable trader)에게 수출-수입 프로세스를 가속화.
- 국가물류생태시스템 개선이 필요
- 신용접수요건 완화
- 대출구조조정요건 완화
-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식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수입 권고안 발행.
- 모든 장관, 주지사 및 시장은 국가예산 또는 지역예산에서 非우선지출예산을 없애고, 예산재할당 등을 통해 보건 및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COVID-19에 대한 대응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
- 정부는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자본을 투입할 권한을 부여받음.

은행 및 금융부문

은행업 (OJK Regulation No 11/POJK.03/2020)

- MSME(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출 등 최대 IDR 100억에 대하여 대출상환 및 리스납입 1년 연기
-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금액제한없는 대출상환 및 리스납입 연기(SME(중소기업) 및 비SME에 적용 가능)

이러한 완화정책은 2021년 3월 31 일까지 적용.



Indonesia (2/3)

경기부양책, 계속

Bank Indonesia(BI,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BI 7-day Reverse Repo Rate를 25bps 낮춘 4.50%로, Deposit Facility(DF) rate는 25bps를 낮춘 3.75%로, Lending Facility(LF) rate는 25bps에서 5.25%로 각각 조정.
- 유동시장에서의 국채(SBN) 구매뿐만 아니라 현물, 인니 내 차액결제선물환거래(DNDF)시장을 포함하여 (통화의 기본적인 가치와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환율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3중 개입 정책의 강도 강화
- 2020년 3월 20일부터 SBN Repo 만기를 12개월로 확장하고 일일단위 옥션을 제공하여 IDR 유동성에 대한 정책을 완화
- 루피아화와 외화 유동성 증대
- 2020년 3월 19일부터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1, 3, 6, 12개월 만기 외환스왑 옥션의 빈도를 주 3회에서 일일단위로 확대.
- 국내의 외화유동성관리 강화를 위해 외화예금금융상품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들이 BI가 완화한 외화준비요건을 활용할 것을 권장.
- 2020년 3월 19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루피아계좌를 인니 내 차액결제선물환거래(DNDF)에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보유에 대한 해지대안이 증가
- 2020년 4월 1일부터 MSME 및 기타 우선부문에 수출입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을 포함하여 은행에 요구되는 일일 IDR보유잔고에 대한 50bps의 인센티브 확대
-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및 국내은행을 활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
- COVID-19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불 시스템 정책 강화:
 - 통화유통, 현금대체 및 백업에 적합한 위생적 통화 제공 및 대중이 비현금지불거래를 우선시하도록 촉구;
 - 은행업에서 BI 및 고객에서 은행업으로의 SKNBI 비용 절감을 위해 비현금지불채널의 사용을 장려하며, 이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비현금 지출 지원

판데믹 채권 발행

정부는 특히 COVID-19 판데믹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채 또는 샤리아소버린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채권은 중앙은행, 국영기업, 기업투자자 또는 개인소매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음. 채권매각 수익금은 국가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 확보, 예금보험공사(LPS)에 대한 대출과 자본 투입, 위기는 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조달하는 등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예정.

정부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기존 법률 또는 규정과 차이)

BankIndonesia

- 은행에 대한 샤리아단기대출 또는 자금조달 권한
-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지만 샤리아단기대출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은행에 특별유동성대출
- 발행시장 내 국채/샤리아채권의 매수권
- LPS 소유의 국채/샤리아채권의 판매/재매입으로 은행의 solvability 문제 처리

LPS

- BI가 소유한 국채/샤리아채권의 판매/재매입을 시행하고 채무증권 등을 발행할 권한
- 실패한 은행으로 선언된은행의 저축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

OJK

- 금융 서비스가 다양한 유형의 기업행위(합병, 결합 등) 이행하도록 명령할 권한
- 특정 당사자의 주식시장 투명성 원칙의 의무 이행을 면제할 권한

조세혜택 - 직접세 및 간접세

재무부는 재무부규정 No.23/PMK.03/2020 (PMK-23)을 발표. COVID-19의 판데믹으로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세제혜택을 포함하고 있음.

Article 21 개인소득세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개인소득세(원천징수) 금액을 지원할 것:

- 2018년 법인세신고서(CITR) 상 산업분류코드가 PMK-23의 별첨 A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
- 근로자는 Tax ID를 보유할 것.
- 연간소득금액이 IDR 2억을 초과하지 아니함.

Article 22 수입원천징수세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해당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2018년 법인세신고서(CITR) 상 산업분류코드가 PMK-23의 별첨 F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
- 해당 세금의 면제는 조세감면서한(Surat Keterangan Bebas/SKB)를 통해 부여되며 발행일로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함.



Indonesia (3/3)

조세혜택 – 직접세 및 간접세, 계속

Article 25 법인세

- 법인세율이 기존 25%에서 2020년~20201년은 22%로, 2022년은 20%로 점진적인 인하.
- 인도네시아 주식회사가 총 주식의 40% 이상을 IDX에 상장한 경우 법인세율 추가 3% 인하.

부가가치세 (VAT)

정부는 다음의 납세자를 저위험납세자로 간주하고 부가세 조기환급 제공 예정:

- 2018년 법인세신고서(CITR) 상 산업분류코드가 PMK-23의 별첨 F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

이 납세자들에게 부가세 조기환급액이 IDR 10억에서 IDR 50억으로 증가

이 혜택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제출되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에 유효

세무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 - 개인소득세

DGT는 2020년 4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2019년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에 대하여 연장하며 연장에 따른 행정제재는 면제. 즉, DGT는 이 행정제재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전자상거래활동과 관련된 세금(e-commerce)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과세구역 내에서 판매되는 국외의 무형자산 및 서비스에 부가세를 부과. 중요한 경제적 실체가 있는(PE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외 판매자 또는 국외 전자상거래 기업이 하는 전자상거래에 소득세 또는 전자거래세(ETT)를 부과할 수 있음.

과세권과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의 연장

COVID-19와 관련, 특정 세무신고의 마감기간이 연장.

- 이의신청(objection) 제출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연장으로 제출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 조세환급금 반환기한은 최대 1개월까지 연장가능.
- 행정제재 면제 및 감면신청, 조세환급 결정통지, 이의신청 결정통지, 세무조사결과 취소신청 등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관세관련 인센티브

재무부장관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대상 재화를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COVID-19 판데믹에 따른 국가경제안정화를 위하여 그 목록을 수정할 예정

고용 관련 대책

- 근로자가 실제로 COVID-19에 감염되거나 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리감독 대상자 (최대 14일)로 분류되어 결근한 경우 직원은 전액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정부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활동을 제한, 전부 또는 일부가 결근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연속성을 고려하여 급여의 금액이나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변경은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고용주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고용주들은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전액 지불해야 하여야 함.

기타 및 출처

금융기관(비은행)

- OJK에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수준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연금의 자금조달 수준을 계산할 때 상각후원가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채무증권) 형태의 자산을 평가 가능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연금의 life cycle fund provisions 시행 연기

자본시장

공매도 금지; 종합주가지수 5% 하락 시 30분 거래 중단조치; 주주총회(GMS)를 거치지 않고 주식환매 가능; IPO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재무제표 제출기한 및 GMS 개최기한 완화, 전자시스템(e-GMS)을 통한 GMS 수행허용; 자본시장에 대한 재무제표 및 평가보고서 관련 규제 완화 등

COVID-19 통제를 위한 지역별 전면적 사회통제

전면적 사회 통제령(PSBB)에 관한 정부령 2020-21호를 발령, COVID-19 TFT 보건부장관이 발령한 이 정부령에 따르면 COVID-19확산 방지에 지방정부 주지사와의 군인 경찰이 함께 실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정부에게 확산방지를 위해 주민접촉 제한 등 규정 및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허락하나 지방정부가 지역격리를 하는 것은 불허함.

외교부의 여행제한

외국인들의 입국과 경유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 제한적 및 영구적 거주 허가가 있거나 외교공무원, 보건의료 관련 직원, 의료 및 식량 공급 및 육상, 항공 및 해상 운송 승무원 등의 외국인에게 면제가 적용.

Sources:

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ttps://setkab.go.id/e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ttps://kemlu.go.id/portal/en/>;

Central Bank of Indonesia: <https://www.bi.go.id/en/Default.aspx>;

Circular Letter No. SE-02/BC/2020 dated 18 February 2020 regarding Examination Guidelines for Importation of Goods Coming from China using ACFTA Preference Rate Scheme (SKA FormE) as an Impact of COVID-19 Pandemic;

Circular Letter No. SE-04/BC/2020 dated 17 March 2020 regarding Ethyl Alcohol Excise Exemption in order to follow up the Prevention of COVID-19 Spread;

National Standard Procedure between th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and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BNPB") No. 01/BNPB/2020, No. KEP-/13/BC/2020 dated 20 March 2020 regarding the Acceleration Service of Importing Goods for Resolving COVID-19;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 PMK-23/PMK.03/2020 dated 21 March 2020 regarding Tax Incentives for Taxpayers who are impacted by COVID-19 which will be valid starting from 1 April 2020

Contact Us

Siddharta Widjaja & Rekan
Registered Public Accountants

33rd Floor Wisma GKBI
28, Jl. Jend Sudirman
Jakarta 10210
Indonesia
T : +62 (0) 21 574 2333 / 2888
F : +62 (0) 21 574 1777 / 2777

Susanto
Head of Clients & Markets
Susanto@kpmg.co.id

Lee Jae Young
Korean Business Desk
JaeYoung.Lee@kpmg.co.id

home.kpmg/i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Siddharta Widjaja & Rekan – Registered Public Accountants, an Indonesian partnership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